

시행일:2019.08.29. 입력자:장다겸 확인자:원대회

가천대학교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본 대학교는 가천학원의 교육이념(박애, 봉사, 애국)에 따라 미래를 지향하는 지성인, 나눔에 동참하는 실천인, 최고를 추구하는 전문인이라는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랑과 나눔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며,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②본 대학교는 어떠한 인종, 국적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학내에서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본 대학교는 교육 정책과 입학 정책,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그 외에 체육활동 및 기타 학교 주관 프로그램의 행정 및 집행에 있어서도, 인종, 국적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다.(신설 2012.08.10)

제2조(명칭) 본 대학교의 교명은 가천대학교라고 한다.

제3조(주소) 본 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에 두고, 메디컬캠퍼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191에 둔다.

제 2 장 편제와 학생정원

제4조(단과대학) ①본 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바이오나노대학, IT융합대학, 한의과대학, 예술대학을 두고, 메디컬캠퍼스에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을 둔다.(개정 2012.08.10., 2014.01.10, 2014.11.18., 2015.02.13., 2015.05.26., 2018.02.21.)

②각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과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자유전공의 입학정원

2-1-1~2 제2편 학 칙

은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개정 2014.01.10., 2015.05.26.)

제5조(대학원) ①본대학교에 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삭제 2017.12.20.), 경영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특수치료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정책대학원, 산업환경대학원, 게임대학원을 둔다.(개정 2012.08.10., 2012.11.09., 2013.10.30., 2015.08.28., 2016.05.24.)

②각 대학원의 학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부속기관) ①본 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중앙도서관
2. 부속한방병원
3. 전산정보원
4. 신문방송국
5. 국제어학원
6. 글로벌미래교육원(명칭변경 2017.09.26.)
7. 학생생활관(명칭변경 2015.03.01)
8. 체육부
9. 출판부
10. 과학영재교육원
11. 공학교육혁신센터
12. 연대본부
13. 가천공익법률지원센터
14. (삭제 2017.03.29.)
15. 세살마을연구원(명칭변경 2016.10.25., 2017.08.29.)
16. (삭제 2018.12.20.)
17.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명칭변경 2015.03.01)
18. 가천공무원고시관(신설 2014.12.24., 명칭변경 2017.08.29.)
19. 공동기기원(신설 2015.02.13.)
20. 기업지원센터(신설 2015.02.13.)
21. (삭제 2018.12.20.)
22. 교양교육연구센터(신설 2015.03.18.)
23. 생명과나눔센터(신설 2015.03.01.)
24. IPP센터(신설 2015.04.27.)
25. (삭제 2018.09.20.)
26. 가천·삼송자동차연구센터(신설 2015.08.28)
27.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신설 2015.08.28., 개정 2015.12.29.)
28. 창조융합원(신설 2015.09.22.)
29. 기초과학연구원(신설 2015.09.22.)
30. (삭제 2019.03.28.)
31. (삭제 2018.12.20.)
32. (삭제 2019.02.21.)

- 33. 장애학생지원센터(신설 2017.05.23.)
 - 34. 한국어교육센터(신설 2017.05.23.)
 - 35.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단(신설 2019.05.28.)
 - 36. 보건진료소(신설 2019.05.28.)
 - 37. 메이커스페이스 센터(신설 2019.05.28.)
 - 38. 가천리더십연구원(신설 2019.08.29.)
- ②본 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13.02.27., 2019.08.29)

- | | |
|--------------------------------|-------------------------------|
| 1. 중앙도서관 | 2. 부속병원 |
| 3. 평생교육원 | 4. 국제어학원 |
| 5. 전산정보원(M)(명칭변경 2019.08.29.) | 6. 가천운동재활센터(명칭변경 2015.05.26.) |
| 7. 보건진료소 | 8. 학생생활관(명칭변경 2017.08.29.) |
| 9. (삭제 2019.08.29.) | 10. 국제협력센터 |
| 11. 약초원 | 12. 장애학생지원센터 |
| 13. 가천CEO아카데미 | 14. 뇌과학연구원(신설 2012.08.10.) |
| 15. 가천의약품제제연구원(신설 2015.08.28.) | |
| 16. 가천융합의과학원(신설 2015.08.28.) | |
| 17. 이길여암·당뇨연구원(신설 2019.02.21.) | |

③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부설연구기관) ①본 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둔다.(개정 2012.08.10., 2013.06.01., 2014.06.23., 2015.12.29.)

- | | |
|----------------------|----------------------|
| 1. (폐지 2015.02.13.) | 2. (폐지 2015.02.13.) |
| 3. (폐지 2019.02.21.) | 4. 산업·환경연구소 |
| 5. IT연구소 | 6. (폐지 2015.02.13.) |
| 7. 한의학연구소 | 8. (폐지 2015.02.13.) |
| 9. 가천음악연구소 | 10. (폐지 2015.02.13.) |
| 11. (폐지 2019.02.21.) | 12. 법학연구소 |
| 13. 신소재및응용기술연구원 | 14.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 15. 아시아문화연구소 | 16. 신기술부품소재연구원 |
| 17. (폐지 2015.02.13.) | 18.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
| 19. 영재교육연구소 | 20. 퍼블릭디자인혁신센터 |
| 21. U-Healthcare센터 | 22. 가천벨연구원 |
| 23. 친환경시스템연구원 | 24.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

2-1-1~4 제2편 학 칙

- | | |
|---|-----------------------------|
| 25.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 26. 글로벌시티연구센터 |
| 27. 바이오나노응용연구센터 | 28. 기능성세라믹센터 |
| 29. 스마트그린홈연구센터 | 30. (폐지 2019.02.21.) |
| 31. 에너지·나노소재연구센터 | 32. (폐지 2015.02.13.) |
| 33. 문화유산역사연구소 | 34.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
| 35. (폐지 2019.02.21.) | 36. (폐지 2015.02.13.) |
| 37. 가천융합연구센터(신설 2013.03.01.) | 38. 실버케어센터(신설 2015.02.13.) |
| 39. 글로벌보건의료연구소(신설 2015.02.13., 명칭변경 2017.09.26.) | |
| 40. 생명과학연구소(신설 2015.02.13.) | 41. 체육과학연구소(신설 2015.05.26.) |
| 42. 도시재생및방재연구센터(신설 2016.09.30.) | |
| 43. 소프트웨어연구소(신설 2016.09.30.) | |
| 44. 전지및에너지변환연구소(신설 2016.09.30.) | |
| 45. 가천영양관리지원연구소(신설 2016.09.30.) | |
| 46. 노화임상영양연구소(신설 2017.09.26.) | |
| 47. 가천인공지능기술원(신설 2017.12.20.) | |
| 48. 사회과학연구소(신설 2018.03.27.) | |
| 49. 헬스케어스마트홈융합연구소(신설 2018.09.20.) | |
| 50. 뇌·언어·인지연구소(신설 2019.02.21.) | |
| 51. 인공지능및스마트시티연구소(신설 2019.02.21.) | |
| 52. 가천데이터과학연구센터(신설 2019.02.21.) | |
| 53. 지능형데이터분석및보안연구센터(신설 2019.02.21.) | |
| 54. 보조공학기술연구센터(신설 2019.02.21.) | |
| 55. 한국프로바이오틱스은행(신설 2019.02.21.) | |
| 56. 구조및복합재료연구소(신설 2019.02.21.) | |
| 57. 바이오&메카트로닉스융합연구소(신설 2019.02.21.) | |
| 58. 국가안전연구센터(신설 2019.02.21.) | |
| 59. ICT 융복합 화재재난연구센터(신설 2019.02.21. 명칭변경 2019.05.28.) | |
| 60. 공학컨설팅센터(신설 2019.05.28.) | |
| 61. IoT용스마트소재핵심연구지원센터(2019.08.29.) | |
- ②본 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둔다.
- | | |
|---------------------|---------------------|
| 1. (삭제 2014.01.10.) | 2. (폐지 2019.02.21.) |
| 3. (폐지 2015.02.13.) | 4. 신경과학연구소 |
| 5. (폐지 2015.02.13.) | 6. (폐지 2015.02.13.) |

- 7. (폐지 2015.02.13.)
- 8. (폐지 2015.02.13.)
- 9. 유-헬스케어연구소
- 10. (폐지 2015.02.13.)
- 11. (폐지 2015.05.26.)
- 12. (폐지 2015.02.13.)
- 13. 보건의료정책연구소
- 14. (폐지 2015.02.13.)
- 15. (폐지 2015.02.13.)
- 16. (폐지 2015.02.13.)
- 17. 가천약학연구원
- 18.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신설 2016.09.30.)
- 19. 운동재활융합연구소(신설 2016.09.30.)
- 20. 가천심혈관연구소(신설 2016.09.30.)
- 21. 의공학연구센터(신설 2018.03.27.)
- 22. 가천미세먼지질환경연구소(신설 2019.05.28.)

③부설연구기관의 설립 및 폐지기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8조(수업년한) ①각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는 2년, 의학과는 4년, 한의학과는 6년(예과 2년, 본과 4년), 건축학과는 5년, 약학과는 6년(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은 2년으로 하고, 입학 후 전공교육은 4년)으로한다.(개정 2013.06.01, 2015.03.01)

②(삭제 2013.03.01.)

③약학과에서의 전공수업 년한은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 까지로 한다.(신설 2013.06.01)

제9조(재학년한) ①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1배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의예과, 의학과는 각각 수업년한의 1배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의과대학은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를 통산하여 적용하며, 재학년한초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05.28., 2015.03.01.)

②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편입학자의 재학년한은 잔여 수업년한의 1배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복수전공 이수자는 재학년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재학년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와 휴업일수

2-1-1~6 제2편 학 칙

제10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학기)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각 학기 수업개시일은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말일까지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학년도 당 30주(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정기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일요일
4. 국정공휴일
5. 개교기념일(5월 9일)

제14조(임시휴업) ①입학고사, 졸업식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제12조에 정한 수업일수에 결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②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휴업기간 중에도 각 학장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입 학

제15조(시기) ①신입학의 시기는 각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편입학의 시기는 각 학기초 30일 이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재입학의 시기는 각 학기초 30일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자격) ①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약학과 제외)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약학과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13.06.01)

제17조(편입학) ①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8.10., 2013.03.01)

②정원의 편입학은 학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편입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재입학) ①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최소 1개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9.02.21.)

③재입학은 소정의 신청기간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절차) ①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증명서
2.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구비서류(모집시에 공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선발) ①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사정한 후 결정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2. 출신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내지 내신 성적
3.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 학과에 한함)
4. 면접고사 성적
5. 기타 전형 자료

②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8.30.)

제21조(입학의 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22조(입학의 절차) 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기일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입학의 취소) ①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

2-1-1~8 제2편 학칙

소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08.30.)

1.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정한 자격에 미달하거나 입학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③입학이 취소된 자의 학적취득은 무효로 하며, 입학에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전과(부) 및 전공의 결정

제24조(전과(부)의 허가 및 절차) ①전과(부)는 제2학년 이상 재학생에 대하여 학과별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50% 범위내에서 매학기초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학과 학생은 입학정원의 50% 범위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8.10., 2013.03.01., 2017.02.23., 2018.12.20.)

②편입학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부) 하지 못한다.

제25조(지원과 선발) ①전과(부)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과(부)는 전학기까지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이 평점평균 2.5점이상인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전형 입학자와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학과 학생은 성적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3.06.01., 2017.02.23., 2018.12.20.)

③전과(부)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전과(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전공의 결정) ①학부입학생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속 학부에서 희망 전공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특성에 따라 전공의 선택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전공의 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별로 희망하는 학생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6조(교과목의 이수) 전과한 자는 전입 학과의 필수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재학년한) 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에 관하여는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제 7 장 휴학, 복학, 퇴학과 제적

제28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는 때에는 휴학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후 첫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 외에는 휴학하지 못한다.(개정 2013.12.26.)

②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병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정신질환 기타 정상적인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일반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26., 2017.02.23.)

⑤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⑥임신·출산·육아휴학(만8세이하 자녀 양육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의사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6.)

⑦학기중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4.05.28.)

제29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학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30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제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각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연속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18.05.29.)
4. 재학년한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
5. 의학계의 경우에는 연속3회 또는 통산 4회 유급한 자

2-1-1~10 제2편 학 칙

6.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자
 7. 사망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 ②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납입금

제32조(입학금) 입학(편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금) ①학생은 각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으로 한다.

②등록기간 이전 소정의 기일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등록금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납부연기하거나 분납할 수 있다.

④총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금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감액 또는 면제) 입학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징계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5조(반환) 일단 납부한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

제 9 장 교과와 이수

제 1 절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제36조(교육과정) ①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일반선택교육과정으로 나눈다.

②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③융복합 전공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타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이수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Code-share 교과목을 5과목이상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02.13.)

④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의1(과정)(신설 2015.12.29.) ①각 대학에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 이라 한다),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을 통합한 학사학위·석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학·석사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6.08.30.)

②각 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③각 대학에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및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④각 대학에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제1항의 학·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학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08.30.)

제37조(학점) ①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음악 전공 실기과목의 학점당 강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강좌 및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국내·외 인턴십,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취득케 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③학생은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국내·외 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학기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군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정보통신망(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교 수업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한다.(개정 2014.08.12.)

⑤정보통신망(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총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의 5분의 1이하로 한다.(신설 2017.02.23.)

제37조의2(입학전 특별과정 이수학점 인정) ①입학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입학전 특별과정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의3(현장체험·창업활동)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사전에 습득토록 하고자 창업동아리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학점(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1-1~12 제2편 학 칙

2017.08.29.)

제38조(전공심화과정) ①전공심화과정은 각 학과, 전공별로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2(부전공, 복수전공 및 융합(연계)전공) ①부전공(20학점)은 학문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인접학문의 전공을 이수함을 말한다.(개정 2016.02.25.)

②복수전공(42학점)은 해당 학과(부)나 다른 학과(부)에서 하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함을 말한다. 융합(연계)전공(42학점)은 2개 이상의 학과(부)나 전공분야가 융합(연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함을 말한다.(개정 2013.03.01.,2019.03.28)

③제1항 내지 제②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2013.03.01)

제38조의3(공학교육인증) ①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공학교육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②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의4(학·석사 연계과정)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5(계약학과 등) 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수여 학위명은 별표 4-1과 같다.

②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의6(학·석사 통합과정) 이론, 연구, 실무 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통합한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08.30.)

제38조의7(학점은행제 학습과정등) 국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10.25.)

제 2 절 등록과 수강신청

제39조(등록) ①학생은 각 학기초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40조(수강신청) ①학생은 각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속학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강의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은 한, 총장의 허가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 3 절 이수와 성적

제41조(이수) ①각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18학점(한외과대학은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 의과대학의 의예과는 학기당 24학점이내, 의학과는 학년당 60학점 이내(학기당 30학점이내))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2010 ~ 2011년도 입학자 및 외국인학생은 19학점, 2009년도 이전 입학자 및 법학과, 5년제 건축학과, 간호학과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 학·석사통합과정과 조기졸업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 이수대상자(2014년 신입생부터) 1학년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08.10, 2013.03.01., 2013.12.26., 2015.03.01., 2016.08.30., 2017.08.29.)

②제1항의 학기당 이수학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이내에서 차기학기로 이월하여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03.01.)

③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여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3.01.)

제42조(계절학기) ①하계 또는 동계방학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각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3조(시험) ①각 학기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시험은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보고서 제출 또는 실기발표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②수강과목의 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2-1-1~14 제2편 학칙

있다.

제44조(응시자격) 수강과목의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개정 2019.05.28.)

제45조(추가시험) 직계상고, 국가의무, 학교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46조(과제물) 수강과목의 담당교수는 그 교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60%~80%, 출석성적 10%~20%, 과제물성적 10%~20% 범위내의 비율로 평가하여 종합한다. 다만, 시험성적은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보고서 또는 실기점수의 평가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등급과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	실점	평점
A ⁺	95~100	4.5
A ⁰	90~94	4.0
B ⁺	85~89	3.5
B ⁰	80~84	3.0
C ⁺	75~79	2.5
C ⁰	70~74	2.0
D ⁺	65~69	1.5
D ⁰	60~64	1.0
F	0~59	0.0

제49조(학점의 인정) ①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D⁰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

②학점의 취득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③일단 취득한 학점이라도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그 취득이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④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의 등급은 "P"(Pass)또는 "F"(Fail)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F"(Fail) 판정 교과목은 성적(표)에 등재하지 않는다.(신설 2017.02.23.)

제50조(학사경고)(개정 2018.05.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학사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계학과의 경우는 학사경고 처

분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5.29.)

1. 각 학기의 성적평점의 평균이 1.5에 미달할 때
2. 각 학기에 3과목 이상 F등급으로 평가받은 때
3. 재학 중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신설 2018.05.29.)

제51조(재수강) ①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중 일부를 재수강할 수 있다.

②동일 교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총평균평점을 계산한다. 다만, 직계상고, 국가의무, 학교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기 종료 7일 이내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성적으로 총평균평점을 계산할 수 있다.

제52조(학년수료와 학점) ①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8.10, 2013.03.01., 2015.03.01., 2017.02.23., 2017.08.29., 2019.02.21)

학 년	졸업학점이 120학점 이상인 경우	졸업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경우	5년제 건축학과 (전공)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약학과
제1학년	30(30)	32	32	38	40	53	
제2학년	60(61)	65	64	76	80	106	
제3학년	90(91)	98	96	114		164	41(41)
제4학년	120(122)	130	128	160		190	88(83)
제5학년			160				135(123)
제6학년							165(159)

※약학과()는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신입학생에 한함.

※의예과(), 의학과()는 2019년 이전 신입학생에 한함.

②제1항의 수료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은 1학년 2개학기, 2학년 4개학기, 3학년 6개학기(약학과 2개학기), 4학년 8개학기(약학과 4개학기), 5학년 10개학기(약학과 6개학기), 6학년 12개학기(약학과 8개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1)

제53조(유급) ①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은 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정에 따로 정한다. 다만, 성적경고를 적용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유급처분을 한다.

2-1-1~16 제2편 학칙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당해년도(의학계의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이 유급처분 한다.

③유급은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의학계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3회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3.12.26.)

④(삭제 2013.03.01)

⑤(삭제 2013.03.01)

제 10 장 졸업과 학위

제54조(졸업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20학점(한의학과 및 건축학과는 160학점, 약학과는 165학점, 간호학과는 122학점, 의학과는 190학점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성적 누계는 평균평점이 2.00이상) 이상으로 하며, 공학교육인증 이수대상자는 10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약학과 신입학생은 159학점으로, 2016학년도까지의 간호학과 신입생은 120학점으로 한다.(개정 2013.03.01., 2013.12.26., 2015.03.01., 2017.02.23., 2017.08.29.)

②각 학과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2(졸업인증) ①총장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학과(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졸업요건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 또는 중국어능력을 졸업요건으로 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다른 외국어나 사회봉사, 자격증 등을 더하여 졸업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03.01.)

②영어 또는 중국어능력 졸업인증 면제대상 및 영어 또는 중국어능력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3.01.)

③제2외국어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해당 외국어를 졸업인증으로 선택할 수 없다.(신설 2015.03.01.)

제54조의3(졸업요건을 위한 전공이수) ①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심화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중 1개 이상의 과정(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편입학자는 제외한다.(개정 2019.03.28.)

②제1항에 따라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의 최소이수 기준은 48학점으로 한다.(개정 2019.03.28.)

③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입학자부터 인문대학 소속학과는 전

공심화과정 이수를 졸업요건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03.27.)

제54조의4(이수학기)4년제 8학기 이상, 5년제 10학기 이상, 6년제 1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생은 7학기를 이수하고, 석사과정 1학기를 이수한 경우 학사과정 8학기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3.28.)

제55조(학위수여) ①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4조의4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9.03.28.)

②졸업자에 대하여 수여되는 학위의 종별은 전공학과 및 계열별, 학부별 전공에 따라 별표 5와 같다.

③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자 중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실험실습,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을 요구한 학과(부)의 경우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6조(후기 졸업) 제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7조(조기 졸업) ①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내에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성적평점의 평균이 4.0점이상에 해당하는 자와 학·석사 연계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의학과, 약학과, 건축학과, 의학과는 제외한다.(개정 2012.08.10, 2013.03.01, 2015.03.01.)

②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료) ①졸업논문 또는 졸업인증으로 인하여 학위를 받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 이후의 기간은 재학년한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수료자가 재학년한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처분 후 수료증(별지서식 제2호)을 수여한다.

제58조의2(재학생 범위의 확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1. 졸업논문 미통과 자 또는 졸업인증제 미인증 자
2.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유보한 자(개정 2019.03.28.)

2-1-1~18 제2편 학 칙

3. 교과목의 추가이수 등을 위하여 졸업을 유보한 자

제59조(졸업의 취소) 졸업한 자로서 제23조 제2항과 제4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제 11 장 규율, 포상과 징계

제60조(규율준수의무) 학생은 이 학칙 및 이 학칙에 기하여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며 학업에 전념함으로써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제61조(포상)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학생이 이 학칙 및 이 학칙에 기하여 정하는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징계는 근신, 정학(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과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징계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장학금

제6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납입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4.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기타 장학금지급규정에 정한 자

제64조(지급절차) 장학금의 지급절차와 납입금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제65조(위탁생) 정부 기타의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교육위탁

이 있는 때에는 총장은 이를 위탁생으로서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6조(외국인학생) 외국인으로서 이 학칙 제16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입학 지원하는 때에는 총장은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67조(외국인학생에 대한 학위수여) 외국인학생으로서 학력을 검정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고 또한 이 학칙 제57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68조(준용) 위탁생과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68조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위한 편의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공개강좌

제69조(공개강좌) ①직능, 교양 또는 학문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직 제

제70조(교직원 등) ①본 대학교에 교원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본 대학교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임용 할 수 있다.

③(삭제 2019.05.28.)

④교원과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정년트랙 교원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과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구분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교양 외국어를 전담하는 교원,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교원,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구분하며, 그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한다.(개정 2012.08.10., 2016.09.30., 2016.11.29., 2019.05.28)

⑥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매주 9시간, 강사는 매주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강의시수는 따로 정한다. 또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강의, 임상실습 및 기타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08.28., 2016.09.30., 2016.11. 29., 2018.02.22., 2018.08.23., 2019.05.28) (삭제

2018.02.22.)

제70조의2(교원의 재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및 기간제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교원인사규정에 정한다. 다만, 강사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5.28.)

제71조(총장·부총장) ①본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본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특정직으로 임명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2조(학장, 대학원장) ①본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장은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로 보할 수 있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3조(사무조직) 본 대학교의 사무조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가천학원의 정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부속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①이 학칙이 정한 부속기관과 부설연구기관 등에는 각각의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비전임(석좌, 객원, 초빙)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2.21.)

②부속기관장과 부설연구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속기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속기관과 부설연구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74조의2(정보화책임관) ①본 대학교에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전체적인 목표 및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한다.

제74조의3(학생군사교육단)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2290호)에 의거 본 대학교내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 16 장 교수회

제75조(구성) ①본 대학교에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로서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전임교수로서 구성한다.

제76조(소집과 회의) ①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전체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단과대학교수회는 각 대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과대학교수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7조(심의·의결사항)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논의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 17 장 교무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78조(구성) ①본 대학교에 교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각종위원회) ①본 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0조(심의사항) ①교무위원회는 학칙 및 제90조에 따른 「학칙시행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과 총장이 교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논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각종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8 장 학생활동

제81조(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①본 대학교에 가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9.22.)

②총학생회는 학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본 대학교의 건학정신에 입각한 자치활동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③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9.22., 2016.05.24.)

1.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C+)이상인 자
2. 총(부)학생회장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3학년(건축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업 년한에 따른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잔여학기에 해당학기를 포함한다. 다만 메디컬캠퍼스는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2학년 이상인 자.(개정 2019.03.28.)
3.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서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4.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임기는 등록을 마친 본교 재학생으로 잔여학기가 2개학기 이상인자
5. 재학기간 중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 또는 형사처벌(금고, 집행유예, 실형 등) 등을 받지 아니한 자
6.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 및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2조(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83조(금지행위) 학생은 교육과 연구의 기본틀을 저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4조(승인, 신고)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과 학생복지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학생활동의 후원을 요청하거나 시상을 의뢰할 때
2. 외부인사를 학내에 초청할 때
3. 교외집회를 할 때

②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20인 이상의 교내집회를 할 때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을 소속대학장과 학생복지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장과 학생복지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9 장 산학협력기관

제86조(산학협력단) ①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표6과 같이 학교 기업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08.10)

제 20 장 자체평가

제87조(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운영 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대상,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장 보 칙

제88조(학칙개정) 본 학칙의 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 교무위원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89조(시행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한 학년별 수료학점 및 졸업학점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1-1~24 제2편 학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등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의 학부나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정된 해당 학부나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한다.
- ③(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57조 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는 2007년도 입학자가 졸업하는 2010년 전기 졸업자부터 변경된 학위로 수여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 후 변경된 학부나 학과 또는 전공으로 복학이나 재입학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전 모집단위와 학위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④(소속대학 및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법정대학, 소프트웨어대학, 미술대학에 재적한 학생은 2007학년도에 각각 개편된 각각 사회과학대학, 소프트웨어 · 전자통신대학, 미술 · 디자인대학 재적생으로,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전공) 재적생은 소프트웨어 · 전자통신대학 재적생으로, 자연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와 생활과학대학 의료경영학과에 재적한 학생은 경상대학 재적생으로 한다.
- ⑤(폐지되는 경원전문대학 학생 등에 대한 특례) 폐지되는 경원전문대학은 2009년 2월 말일(2년제 학과는 2008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대학 및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수료 및 졸업요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 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못할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학칙 제 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교에 편입학하거나 다른 전문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한 학과선택,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과 졸업 · 학점 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경원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및 간호과에 대한 경과조치) 경원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재적생과 통합학년도 이전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간호과의 재적생 중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본 대학교 유아교육학과나 간호학과로 편입학한 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하여 본 대학교 유아교육학과와 간호학과 학생과 동등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⑦(경원전문대학 학적에 대한 경과조치)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승인(2006.10.16)으로 2007학년도 부터 경원전문대학 학적은 이관되어 경원대학교명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⑧(규정의 폐지) 보건소규정, 교육개발원규정과 공동기기센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되는 경원전문대학 학생 중 특례에 의한 편입학 거부자 구제 특례) 경원전문대학 존속기간 내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 중 본 대학교로의 특례에 의한 편입학을 거부한자와 타 전문대학으로의 특례에 의한 편입학이 수용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경원전문대학의 학사운영기간을 2011년 2월말일(2년제 학과는 2010년 2월말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이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학위수여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학과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2009년 3월 1일자로 법과대학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20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중 제25조의 2(전공의 결정)조항은 2008학년도 바이오나노학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 등 대학 제규정에 부속기관으로 '가천공익법률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준용) 학칙 제57조 제4항에 의하여 졸업논문을 운영하는 학부(과) 경우 종전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2-1-1~26 제2편 학 칙

③(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되 이전 졸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 등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③(소속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학사편제개편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재적생은 경상대학 신문방송학과 재적생으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재적생은 법과대학 행정학과 재적생으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재적생은 바이오나노대학 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④(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학과 통합에 의하여 모집단위가 폐지된 섬유미술과, 약과학과 재적생의 경우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⑤(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학생 등에 대한 특례) 1.통합으로 인하여 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이수·수료 및 졸업요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통합된 가천대학교의 재적생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학과, 기취득학점의 인정, 졸업요건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재입학)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재적생 중 재입학을 원할 경우 가천대학교 재적생으로 보며,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개편편입학)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통합한 경원전문대학, 가천길대학의 재적생은 학칙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조건에 의거 본 대학교에 편입하거나 다른 전문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한 학과선택,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과 졸업·학점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학적에 대한 경과조치)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승인으로 2012학년도 3월부터 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학적은 가천대학교로 이관되며, 모든 제증명의 명칭은 가천대학교로 발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속대학 및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야), 회계·세무학과는 경상대학에서 경영대학으로, 신문방송학과는 경상대학에서 법과대학으로,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는 공과대학에서 건축대학으로, 수학과정보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서 바이오나노대학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또한 의과학대학은 보건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

2. 2013학년도 학사편제 개편에 따라 경영학과는 경영학트랙, 글로벌경영학과 (야)는 지식산업인재학부, 글로벌헬스케어경영학과는 헬스케어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는 한국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영미어문학과,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어문학과,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어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일본어문학과, 신문방송학과는 언론영상광고학과, 수학과정보학과는 수리과학과, 물리학과는 나노물리학과, 화학과는 나노화학과, 인터랙티브미디어학과는 컴퓨터미디어융합학과, 사회체육학과는 체육학과, 태권도·경호학과는 태권도학과, 연기예술과는 연기예술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③(학과 신설) 2013학년도에 글로벌경영학트랙과 경찰·안보학과를 신설하고, 글로벌경영학트랙은 경영대학에, 경찰·안보학과는 법과대학 소속으로 한다.

④(복학 및 재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⑤(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중 의예과 과정 정원)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중 의예과 과정 정원은 해당 과정을 마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1-1~28 제2편 학 칙

②(소속대학 및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관광경영학과, 경제학과, 헬스케어경영학과, 응용통계학과는 경상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는 생활과학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행정학과, 언론영상광고학과는 법과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수리과학과는 바이오나노대학에서 IT대학으로, 식품생물공학과는 공과대학에서 바이오나노대학으로, 식품영양학과는 생활과학대학에서 바이오나노대학으로, 회화과, 조소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는 미술·디자인대학에서 예술대학으로, 성악과, 관현악과, 피아노과, 작곡과는 음악대학에서 예술대학으로, 의상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연기예술학과는 생활과학대학에서 예술대학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2. 2014학년도 학사편제 개편에 따라 경제학과는 글로벌경제학과, 지식산업인재학부는 경영학과 경영학트랙, 회계·세무학과는 경영학과 경영학트랙, 국제통상학과와 경제학과는 글로벌경제학과, 중국어문학과와 일본어문학과는 동양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와 프랑스어문학과는 유럽어문학과, 건축설비공학과와 소방방재공학과는 설비플랜트·소방방재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는 기계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는 화공생명공학과, 수리과학과는 수학·금융정보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와 컴퓨터미디어융합학과는 컴퓨터공학과, 회화과와 조소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는 미술·디자인학부, 성악과와 관현악과, 피아노과, 작곡과는 음악학부, 체육학과와 태권도학과는 체육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③(복학 및 재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학과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년조정) 약학과 학년조정을 위한 학칙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5호,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약학과 2011학년도 입학자는 5학년으로, 2012학년도 입학자는 4학년으로, 2013학년도 입학자는 3학년으로 각각 학년을 조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53조는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속대학 및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금융수학과는 경영대학으로,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실내건축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는 공과대학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2. 2015학년도 학사편제 개편에 따라 수학·금융정보학과는 금융수학과, 설비플랜트·소방방재공학과는 설비·소방공학과, 영양학과는 식품영양학과, 소프트웨어설계·경영학과는 소프트웨어학과, 미술·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은 미술·디자인학부 디자인, 의공학과는 의용생체공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③(복학 및 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휴학, 제적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이 소속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학과의 재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1~30 제2편 학 칙

이 학칙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2018학년도 학사편제개편에 따라 모집단위가 폐지된 영미어문학과<야>, 토목환경공학과<야> 소속 학생중 휴학, 제적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의 학과편제가 없는 경우 영미어문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주간으로 각각 소속변경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학사편제 개편에 따라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영학과(경영학트랙)<야>, 글로벌경제학과<야>, 전자공학과<야> 소속 학생중 휴학, 제적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의 학과편제가 없는 경우 경영학부(경영학), 글로벌경제학과, 전자공학과 주간으로 각

2-1-1~32 제2편 학 칙

각 소속변경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학사편제개편에 따라 모집단위가 폐지된 에너지IT학과 소속 학생 중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의 학과편제가 없는 경우 전기공학과로 각각 소속변경 한다. 단, 학생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에너지IT학과 소속으로 한다.

③(소속대학 및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19학년도 학사개편에 따라 IT대학은 IT융합대학으로 변경한다.

2. 행정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서 법과대학으로, 전기공학과는 공과대학에서 IT융합대학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3. 학과명이 변경되는 헬스케어경영학과 소속 학생 중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의 학과편제가 없는 경우 의료경영학과로 각각 소속을 변경한다.

4.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소속 학생 중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학년의 학과편제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경학부(도시계획학전공), 도시계획·조경학부(조경학전공), 건축학부(실내건축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로 각각 소속을 변경한다.

④(학과 신설) 2019학년도에 신소재공학과를 신설하고, 공과대학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중 제18조 ②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및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1. 2020학년도 학사개편에 따라 예술대학은 예술·체육대학으로 변경한다.

2. 학과명이 변경되는 글로벌경제학과, 나노물리학과, 나노화학과 소속 학생 중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 시 해당학년의 학과편제가 없는 경우 변경된 학과로 각각 소속을 변경한다.

3. 학부제가 신설되는 소프트웨어학과, 자유전공(인문) 소속 학생 중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복학 및 재입학 시 해당학년의 학과편제가 없는 경우 변경된 학부로 각각 소속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 신설) 2020학년도에 심리학과를 신설하고,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1-1~34 제2편 학 칙

(별표 1) 입학정원(개정 2012.08.10., 2013.03.01., 2013.12.26., 2014.01.10., 2014.11.18., 2015.05.26., 2015. 09.22., 2016.05.24., 2016.08.30., 2017.05.23., 2017.08.29., 2018.03.27., 2019.03.28)

□ 글로벌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20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사회 계열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300 [150] [150]	
		자연과학 계열	금융수학과	50
인문·사회 계열	사회과학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0	
		관광경영학과	50	
		경제학과	110	
		의료경영학과	50	
		응용통계학과	50	
		사회복지학과	50	
		유아교육학과	60	
		심리학과	50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50	
		영미어문학과	50	
		동양어문학과	100	
		유럽어문학과	60	
	법과대학	행정학과	50	
		법학과	100	
경찰·안보학과		50		
공학계열	공과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 [조경학]	80	
		건축학부 [실내건축학] [건축학(5년)] [건축공학]	120	
		설비·소방공학과	80	
		화공생명공학과	100	
		신소재공학과	50	

계열	대학	학과	2020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기계공학과	100		
		토목환경공학과	50		
		산업경영공학과	50		
공학계열	바이오 나노 대학	바이오나노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식품생물공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과학과	50		
		물리학과	50		
화학과		50			
공학계열	IT융합 대학	AI·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전공]	150 [100] [50]		
		컴퓨터공학과	150		
		전자공학과	120		
		전기공학과	80		
자연과학 계열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30		
예·체능 계열	예술·체육 대학	미술·디자인학부 [회화·조소] [디자인] [패션디자인]	210 [70] [100] [40]		
인문·사회계열		음악학부 [성악] [기악] [작곡]	80 [20] [48] [12]		
예·체능 계열			체육학부 [체육] [태권도]	70 [40] [30]	
			연기예술학과	40	
		인문·사회 계열	가천리버럴 아츠칼리지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 [한국학전공]	91
소계			3,241	0	
			3,241		

*학·석사통합과정 : 전기공학과(6명), 화공생명공학과(12명),
컴퓨터공학과(25명), 전자공학과(10명), 총53명(정원내)

2-1-1~36 제2편 학 칙

□ 메디컬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20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자연과학 계열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12]	
	약학대학	약학과	30	
	간호대학	간호학과	255	
공학계열	보건과학 대학	의용생체공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치위생학과	40	
		응급구조학과	20	
		물리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운동재활복지학과	40	
		소계		
			555	

(별표 2)

□ 글로벌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19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사회 계열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300 [150] [150]	
		자연과학 계열	금융수학과	50
인문·사회 계열	사회과학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0	
		관광경영학과	50	
		글로벌경제학과	110	
		의료경영학과	50	
		응용통계학과	50	
		사회복지학과	50	
		유아교육학과	60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50	
		영미어문학과	50	
		동양어문학과	100	
		유럽어문학과	60	
	법과대학	행정학과	50	
		법학과	100	
		경찰·안보학과	50	
공학계열	공과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 [조경학]	80	
		건축학부 [실내건축학] [건축학(5년)] [건축공학]	120	
		설비·소방공학과	80	
		화공생명공학과	100	
		신소재공학과	50	
		기계공학과	100	
		토목환경공학과	50	
		산업경영공학과	50	

2-1-1~38 제2편 학 칙

계열	대학	학과	2019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공학계열	바이오 나노 대학	바이오나노학과	50	
		식품생물공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식품영양학과	60	
		생명과학과	50	
		나노물리학과	40	
		나노화학과	40	
공학계열	IT융합 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50	
		컴퓨터공학과	150	
		전자공학과	120	
		전기공학과	80	
자연과학 계열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30	
예·체능 계열	예술대학	미술·디자인학부 [회화·조소] [디자인]	210	
인문·사회 계열			[패션디자인]	[70] [100]
		예·체능 계열	음악학부 [성악] [기악] [작곡]	80
[20] [48] [12]				
체육학부 [체육] [태권도]			70	
			[40] [30]	
연기예술학과	40			
인문·사회 계열	가천리버럴 아츠칼리지	자유전공(인문)	131	
소계			3,221	0
			3,221	

*학·석사통합과정 : 전기공학과(6명), 화공생명공학과(12명),
컴퓨터공학과(25명), 전자공학과(10명), 총53명(정원내)

□ 메디컬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19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자연과학 계열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12]	
	약학대학	약학과	30	
	간호대학	간호학과	255	
공학계열	보건과학 대학	의용생체공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치위생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운동재활복지학과	40	
		소계		
			575	

2-1-1~40 제2편 학 칙

(별표 3)

□ 글로벌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18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사회 계열	경영대학	경영학부	271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150 121	
자연과학 계열		경영학과(경영학트랙)<야>		47
		금융수학과	50	
인문·사회 계열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5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0	
		관광경영학과	50	
		글로벌경제학과	90	30
		헬스케어경영학과	50	
		응용통계학과	50	
		사회복지학과	50	
		유아교육학과	60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50	
		영미어문학과	50	
		동양어문학과	100	
		유럽어문학과	60	
	법과대학	법학과	100	
		경찰·안보학과	50	
공학계열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50	
		조경학과	50	
		실내건축학과	50	
		건축학과(5년)	50	
		건축공학과	50	
		전기공학과	50	
		설비·소방공학과	80	
		화공생명공학과	100	
		기계공학과	100	
		토목환경공학과	50	
		산업경영공학과	50	
공학계열	바이오 나노	바이오나노학과	50	
		식품생물공학과	50	

계열	대학	학과	2018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자연과학 계열	대학	식품영양학과	60	
		생명과학과	50	
		나노물리학과	40	
		나노화학과	40	
공학계열	IT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50	
		컴퓨터공학과	150	
		전자공학과	93	27
		에너지IT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30	
예·체능 계열	예술대학	미술·디자인학부 [회화·조소] [디자인]	210 [70] [100]	
인문·사회 계열		[패션디자인]	[40]	
예·체능 계열		음악학부 [성악] [기악] [작곡]	80 [20] [48] [12]	
		체육학부 [체육] [태권도]	70 [40] [30]	
	연기예술학과	40		
인문·사회 계열	가천리버럴 아츠칼리지	자유 전공(인문)	83	
소계			3,117	104
			3,221	

*학·석사통합과정 : 전기공학과(6명), 화공생명공학과(12명),
컴퓨터공학과(25명), 전자공학과(10명), 총53명(정원내)

2-1-1~42 제2편 학 칙

□ 메디컬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18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자연과학 계열	의과대학	의예과	28	
	약학대학	약학과	30	
	간호대학	간호학과	255	
공학계열	보건과학 대학	의용생체공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치위생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운동재활복지학과	40	
소계			563	-
			563	

(별표 4)

□ 글로벌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17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사회 계열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트랙	200	62
			글로벌경영학트랙	100	
자연과학 계열			금융수학과	40	
인문·사회 계열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5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0		
	관광경영학과		60		
	글로벌경제학과		100	30	
	헬스케어경영학과		60		
	응용통계학과		50		
	사회복지학과		50		
	유아교육학과		60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50	
		영미어문학과		50	30
		동양어문학과		100	
		유럽어문학과		60	
	법과대학	법학과		100	
		경찰·안보학과		40	
공학계열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50	
		조경학과		50	
		실내건축학과		38	
		건축학과(5년)		50	
		건축공학과		50	
		전기공학과		50	
		설비·소방공학과		80	
		화공생명공학과		100	
		기계공학과		50	
		토목환경공학과		50	30
		산업경영공학과		50	
공학계열	바이오 나노 대학	바이오나노학과		50	
		식품생물공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식품영양학과		60	
		생명과학과		50	
		나노물리학과		40	

2-1-1~44 제2편 학 칙

계열	대학	학과	2017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나노화학과의	40	
공학계열	IT 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00	
		컴퓨터공학과	150	
		전자공학과	90	32
		에너지IT학과	50	
자연과학 계열	한의과 대학	한의예과	30	
예·체능 계열	예술대학	미술·디자인학부 [회화·조소] [디자인]	220 [70] [100]	
인문·사회 계열		[패션디자인]	[50]	
예·체능 계열		음악학부 [성악] [기악] [작곡]	110 [30] [60] [20]	
		체육학부 [체육] [태권도]	80 [40] [40]	
		연기예술학과	40	
		인문·사회 계열	가천 리버럴 아츠 칼리지	자유전공(인문)
소계			3,052	184
			3,236	

*학·석사통합과정 : 전기공학과(6명), 화공생명공학과(12명), 컴퓨터공학과(25명), 전자공학과(10명)
총53명(정원내)

□ 메디컬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	2017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자연과학 계열	의과대학	의예과	28	
	약학대학	약학과	30	
	간호대학	간호학과	255	
공학계열	보건과학 대학	의용생체공학과	40	
자연과학 계열		치위생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운동재활복지학과	35	
소계			548	
			548	

2-1-1~46 제2편 학 칙

(별표 4-1)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 (개정 2013.03.01.)

대학	명칭	정원	학습과정	학위명	비고
경상대학	경영학과	30명	야간	경영학사	재교육형
IT대학	인터랙티브미디어학과 (게임프로젝트트랙)	30명	주간	공학사	채용조건형 (정원 내·외)

(별표 5) 학위종별 (개정 2012.08.10, 2012.11.09, 2013.03.01., 2014.01.10., 2014.11.18., 2017.02.23., 2017.12.20., 2019.03.28)

글로벌캠퍼스

대학	학과		수여학위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트랙	경영학사
		글로벌경영학트랙	경영학사
	금융수학과		이학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행정학사
	언론영상광고학과		언론학사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사
	글로벌경제학과		경제학사
	헬스케어경영학과		경영학사
	응용통계학과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문학사
	영미어문학과(주,야)		문학사
	동양어문학과		문학사
	유럽어문학과		문학사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경찰·안보학과		경찰·안보학사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공학사
	조경학과		공학사
	실내건축학과		공학사
	건축학과<5년>		건축학사
	건축공학과<4년>		공학사
	전기공학과		공학사(**공학사)
	설비·소방공학과		공학사
	화공생명공학과		공학사(**공학사)

2-1-1~48 제2편 학 칙

대학	학과	수여학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공학사(**공학사)
	토목환경공학과(주)	공학사(**공학사)
	토목환경공학과(야)	공학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사
바이오나노대학	바이오나노학과	공학사
	식품생물공학과	공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나노물리학과	이학사
	나노화학과	이학사
IT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주)	공학사(**공학사)
	전자공학과(야)	공학사
	에너지IT학과	공학사
한 의과대학	한의학과	한의학사
예술대학	미술·디자인학부 [회화·조소] [디자인] [패션디자인]	미술학사 미술학사 가정학사
	음악학부 [성악] [기악] [작곡]	음악학사 음악학사 음악학사
	체육학부 [체육] [태권도]	체육학사 체육학사
	연기예술학과	연극.영화학사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는 공학사 외 별도의 명칭을 괄호 안에 붙임

□ 메디컬캠퍼스

대학	학과	수여학위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보건과학대학	의공학과	공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사
	방사선학과	방사선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운동재활복지학과	이학사

구분	전공(융합학과)	수여 학위
융합전공	* 경찰학 융합전공 융합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태권도·경호학과	경찰학사
	* 디스플레이 융합전공 융합학과 :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에너지IT학과	디스플레이공학사
	* 포토그래피 융합전공 융합학과 : 회화과, 조소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포토그래피학사
	* (삭제 2019.03.28.)	
	* 기능성생물소재 융합전공 융합학과 :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의학과	기능성생물소재학사
	*나노기반 기능성 신소재 융합 전공 융합학과 : 화공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나노신소재학사
	*미디어 컴퓨터 융합전공 융합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디어·컴퓨터학사
* 데이터 과학 융합전공 융합학과 :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글로벌경영학트랙) 금융수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과학학사	

구분	전공(융합학과)	수여학위
	* 지능형행정시스템 융합전공 융합학과 : 행정학과, 컴퓨터공학과 * (삭제 2019.03.28.) * 지능형 데이터분석 및 보안 융합전공 융합학과 : 컴퓨터공학과 에너지IT학과 경찰·안보학과 * 화장품공학 융합전공 융합학과 : 화공생명공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과학과	지능형행정시스템학사 지능형 데이터 분석 및 보안 학사 화장품공학학사
부전공	* 인지과학 부전공 융합학과 및 대학(원) : 유럽어문학과 컴퓨터공학과,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특수치료대학원, 약리학과	

(별표6) 학교기업 명칭, 관련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신설 2012.08.10)

명칭	관련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GRP(Gachon Radio-Pharmaceutical)	방사선학과	의약품 화합물및 항생물질 제조업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7번지

(별지서식 제1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0000학과 <전공>	(00학사)
복 수 전	공 : 0000학과 <전공>	(00학사)
연 계 전	공 : 0000학과 <전공>	(00학사)
부 전	공 : 0000학과 <전공>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총장 박사

인

학 위 번 호 : 가천대 (학)

(별지서식 제2호)

제 호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 전과정 (전공)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대학장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총 장 인